제4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우리 회사는 정관 제19조에 의하여 제47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일 시 : 2026년 3월 23일 (월) 오전 10시

2. 장 소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75번길 9, 바른아트센터

3. 회의목적사항

가. 보고사항 : 감사보고, 영업보고,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, 외부감사인 선임보고

나. 부의안건

제1호 의안 : 제47기 (2025.01.01 ~ 2025.12.31) 재무제표(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안) 포함)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

제2호 의안 : 정관 일부 개정의 건

제3호 의안 :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송돈헌 사외이사 선임의 건

제4호 의안 : 자기주식 소각의 건

제5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4.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

당사는「상법」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, 이 두 제도의 관리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.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,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.

가. 전자투표 · 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
- 인터넷 주소 : http://evote.ksd.or.kr
- 모바일 주소 : http://evote.ksd.or.kr/m

나. 전자투표 행사 ·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: 2026년 3월 13일 9시 ~ 3월 22일 17시
(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)

다.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· 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
-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: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
(K-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)

라. 수정동의안 처리 :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

2026년 2월 20일

주식회사 지누스
대표이사 정백재 (직인생략)

[별첨] 안건 참고 자료

제1호 의안 : 제47기 (2025.01.01 ~ 2025.12.31) 재무제표(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안) 포함)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

※ 제47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주주총회소집공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현금배당(예정) : 주당 90원

제2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변경전 내용	변경후 내용	변경의 목적
제 9 조의 2 (주식 등의 전자등록) 제 12 조 (명의개서대리인) 제 14 조 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 제 15 조 (전환사채의 발행) 제 16 조 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 제 17 조 (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)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. 제 18 조 (소집시기) 제 19 조 (소집권자) 제 20 조 (소집통지 및 공고) 제 21 조 (소집지) 제 22 조 (의장) ① (생략)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 제 23 조 (의장의 질서유지권) 제 24 조 (주주의 의결권) 제 25 조 (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) 제 26 조 (의결권의 불통일행사) 제 27 조 (의결권의 대리행사) 제 28 조 (주주총회의 결의방법) 제 29 조 (주주총회의 의사록) 제 31 조 (이사의 선임) 제 34 조 (대표이사 등의 선임) 제 35 조 (이사의 직무) 제 35 조의 2 (이사의 보고의무) 제 36 조 (이사회의 구성과 소집) 제 37 조 (이사회 내 위원회) ①~② (생략)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38조,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④ (생략) 제 38 조 (이사회의 결의방법) 제 39 조 (이사회의 의사록) 제 40 조 (이사의 보수와 퇴직금) 제 41 조 (상담역 및 고문) 제 42 조의 2 (감사위원회의 직무 등) 제 42 조의 3 (감사록) 제 43 조 (사업년도) 제 44 조 (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· 비치 등) 제 44 조의 2 (외부감사인의 선임) 제 45 조 (이익금의 처분) 제 45 조의 2 (주식의 소각) 제 46 조 (이익배당) 제 47 조 (분기배당)	제 9 조 (주식 등의 전자등록) 제 11 조 (명의개서 대리인) 제 12 조 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 제 13 조 (전환사채의 발행) 제 14 조 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 제 15 조 (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)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. 제 16 조 (소집시기) 제 17 조 (소집권자) 제 18 조 (소집통지 및 공고) 제 19 조 (소집지) 제 20 조 (의장) ① (좌동)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 제 21 조 (의장의 질서유지권) 제 22 조 (주주의 의결권) 제 23 조 (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) 제 24 조 (의결권의 불통일행사) 제 25 조 (의결권의 대리행사) 제 26 조 (주주총회의 결의방법) 제 27 조 (주주총회의 의사록) 제 29 조 (이사의 선임) 제 32 조 (대표이사 등의 선임) 제 33 조 (이사의 직무) 제 33 조의 2 (이사의 보고의무) 제 34 조 (이사회의 구성과 소집) 제 35 조 (이사회 내 위원회) ①~② (좌동)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36조,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④ (좌동) 제 36 조 (이사회의 결의방법) 제 37 조 (이사회의 의사록) 제 38 조 (이사의 보수와 퇴직금) 제 39 조 (상담역 및 고문) 제 40 조의 2 (감사위원회의 직무 등) 제 40 조의 3 (감사록) 제 41 조 (사업년도) 제 42 조 (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· 비치 등) 제 42 조의 2 (외부감사인의 선임) 제 43 조 (이익금의 처분) 제 43 조의 2 (주식의 소각) 제 44 조 (이익배당) 제 45 조 (분기배당)	기 삭제 조문 정비 (조문 번호 조정)

변경전 내용	변경후 내용	변경의 목적
제 30 조 (이사의 수)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. 제 32 조 (이사의 임기) ① (생략) ② 사외이사의 총 연임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. 제 33 조 (이사의 보선) ① (생략) ② 사외이사가 사임·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0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 ③ (생략) 제42조 (감사위원회의 구성) ①~② (생략)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,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 (신설)	제 30 조 (이사의 수)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. 제 32 조 (이사의 임기) ① (좌동) ② 독립이사의 총 연임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. 제 33 조 (이사의 보선) ① (좌동) ② 독립이사가 사임·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0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 ③ (좌동) 제42조 (감사위원회의 구성) ①~② (좌동)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하고, 독립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(삭제) ④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. 부칙 (2026.3.23) 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2026년 3월 23일부터 변경하여 시행한다. 다만, 제30조, 제32조 제2항, 제33조 제2항, 제42조 제3항, 제4항, 제5항,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	상법 개정 반영

제 3 호 의안 :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송돈헌 사외이사 선임의 건

- 후보자 성명/생년월일/사외이사 여부/최대주주와의 관계/추천인 등

성명	생년월일	사외이사 후보자 여부	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	최대주주와의 관계	추천인
송돈헌	1965.03.21	사외이사	해당	-	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

- 후보자 주된 직업/세부 경력/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/체납사실 여부/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/법령상 결격사유 유무

성명	주된 직업	주요약력	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	체납사실 여부	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	법령상 결격사유 유무
송돈헌	(전)현대중공업 자문역	'20~' 21 (전)현대중공업 자문역 '17~' 19 (전)한국조선해양/현대중공업 전무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

제4호 의안 : 자기주식 소각의 건

- 자본의 감소를 하는 사유 : 자기주식 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
- 자본감소의 방법 : 자기주식 소각
- 자본감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, 감소비율 및 기준일

감자주식의 종류	감자주식수	감자비율	감자기준일	감자전자본금 (발행주식수)	감자후자본금 (발행주식수)
보통주 (자기주식)	20,285주	0.09%	2026.04.27	11,364,474,000원 (22,254,576주)	11,354,331,500원 (22,234,291주)

※ 기타 참고사항

- 자본금 감소의 주요 일정

주주총회 예정일	채권자 이의제출기간	자본감소 기준일
2026.03.23	2026.03.23 ~ 2026.04.24	2026.04.27

- 상기 자기주식 소각은 과거 무상증자 시행 시 단수주식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건입니다.
- 상기 '감자후 발행주식수'는 현재 발행주식 총수에서 금번 감자주식수를 차감하여 산정한 수치이며, 본 주식소각 건 외에 배당가능이익 범위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소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(이익소각 및 감자 후 발행주식수 : 21,925,813주)

제5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- 이사의 수 ·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

(당기)

이사의 수 (사외이사수)	6명 (3명)
보수총액 또는 최고 한도액	3,000,000,000 원

(전기)

이사의 수 (사외이사수)	6명 (3명)
실제 지급된 보수총액	884,430,725 원
최고 한도액	3,000,000,000 원